# 2022년 10차 일자리분과 회의록

일 시	2022년 10월 19일 (수) 15:00 ~ 17:00										
장 소	수원시홍재복지타운 4층 회의실										
	성 명	확인	성 명	확인	성 명	확인					
	박선희( <del>공공</del> 분과장)	X	조재영( <del>공공</del> )	Х	이정미	X					
참석자	장미선(민간분과장)	Ο	강 <del>은</del> 진	0	이채영	Х					
6/20	박은혜(총무)	Х	김태성	Х	이호길	0					
공(0/5)	황수정(서기)	О	나윤애	Х	장순혁	0					
민(5/15)	고현정( <del>공공</del> )	X	서문지애	О	조영숙	X					
	김혜진(공공)	X	신민우	X	최수정	X					
	이유정(공공)	Х	이미진	X							
	1. 보고 및 공유사항										
	1) 분과장 및 위원 인사										
회의주제 및 안건	2) 기관 행사 및 사업 보고										
	2. 안건 논의										
	1) 2023년 시행계획 수립 모니터링										
	3. 기타										
	1) 차기회의 일정										

### 회의결과

#### 1. 보고 및 공유사항

1) 분과장 및 위원 인사

#9월 일자리분과 회의록

#### 2) 기관 행사 및 사업 공유

① 호매일장애인복지관: 발달장야인 캐릭터디자인 체험 및 전시(10.22 경기상상캠퍼스)

② 수원YWCA: 인문학콘서트(11.11) 대면, 비대면 동시 진행

③ 우만종합복지관 : 노인일자리 활동교육 진행

④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: 취업박람회 예정(11.17)

⑤ 마음샘정신재활센터 : 일상진행

⑥ 수원지역자활센터 : 자난주 바자회 진행 완료. 23년 문구용품점 오픈 예정

### 2. 논의사항

#### 가. 2023년도 시행계획 수립 모니터링

- 1)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
  - 올해부터 우선구매교육 시작하는 등 추진의 효과가 나타남
  - 예산은 수원시사회적경제센터 사업예산 내 포함될것으로 파악(확인필요)
  - 현재 구매실적 집계대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, 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이 명시되어 있음.
    - --> 자활기업 포함(사회적경제 영역에 자활기업이 포함되는 만큼), 그 외 기업 확장을 위

# 회 의 결 과

하여 '자활기업 등' 으로 표기요청

- --> 취약계층 일자리 생산품으로 확대 필요
- 2) 노동자 복지 향상 및 지원 강화
  - 성과지표 만족도 추가 (현재 만족도 집계를 하고 있어 성과지표에 포함 가능할 것으로 판단)
- 3) 고용단절여성 일자리사업
  - 팔달새일센터를 제외한 영통새일센터의 사업만을 대상으로함.(수원시 요청)
  - 인력활용계획 수정(사업담당자 5명만 표기)
- 4) 수원형 성장-업 일자리사업
  - (구)새-일 공공일자리사업의 명칭 변경
  - 고용안정성을 위하여 현행 근무기간 10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2개월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음. 다시 의견 제출 할 예정
- # 붙임1. 2023년 시행계획 수립 모니터링 의견 정리

### 나. 기타논의

- 구매의무화 대상을 사회적경제 일자리생산품에서 복지일자리 생산품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
- 물품박람회 개최시 기관연합으로 함께 참여하는 방안 모색
- 수원시 주최 행사 시 물품 판매 추진(평생학습축제 등)

# Ⅲ.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

- 11월 회의 없이 12월 행사참여로 대체

- 일 시 : 2022. 12. 20.(화)

- 장 소 :

- 내 용 : 역량강화 컨퍼런스

### 회의사진



# # 붙임1. 2023년 시행계획 수립 모니터링 의견 정리

사업 번호	ᆌᆸᆘᅅᅼᅜᆉᅅᄱ	사업	쥚	만	ILOHU			담당	담당 위원	모니터링 의견		
번호	세부사업(과업)명	구분	쵰	협력		사업부서		담당 분과		실무분과 의견	부서의견	
사회적 일자리 확대 및 기반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 고용 증대												
I <del>-2</del> 1	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	신규	0	0	지역 경제과	사회적 경제팀	김선미	일자리 분과	장미선 김태성	-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 자활기업도 사회적경제 기업에 포함되는 바, 성과지표 산출근거에 '자활 기업'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함. 또한 향후 구매 실적 집계대상기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구매실적 집계대상기업 문구를 수정 해 줄 것을 요청함 (수정요청안) '예비사회적기업, 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 을기업, 자활기업 등'		
I <del>-2-</del> 2	노동자 복지향상 및 지원강화	지속	0	0	노동 정책과	노동 권익팀	조남희	일자리 분과	이호길 이미진	-비정규직 노동자복지센터 및 이동노동자쉼터 이용 만족도를 성과지표에 추가하여 사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청함 목표수준은 전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(21년도 조사결과 95%)를 반영하여 수립		
I-25	고용단절여성 일자리사업	신규	Х	0	일자리 정책과	청년여 성일자 리팀	김윤희	일자리 분과	황수정조영숙	-인력활용 및 확충계획에 센터 전체 직원수가 아닌 해당 사업 관련 인원만 적시하는 것으로 수정요청함(도 특화생 전체적 표르크라 및 함성 편안용		
								여성가 족분과	박재규 오윤희	-고용단절여성의 전체적 프로그램 및 참여 파악을 위해 팔달새일센터 관련 사업 포함 필요		
I <del>-26</del>	수원형 성장-업 일자리 사업	지속	X	0	일자리 정책과	일자리 정책팀	안정은	일자리 분과	박은혜 서문자애	-참여자의 안정적 고용유지를 통한 업무숙련도 향상 및 생계지원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현 근무기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. 타지자체 운영 사례점검 등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필요 (연 11개월 근무, 22개월까지 지속 연장 등)		